

유해위험 기계 · 기구 등의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법학박사) 정 진 우



안전인증제도

가. 개요

안전인증제도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사용 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방호장치·보호구의 불량품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여 제조·유통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생산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로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보호 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가 있다.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 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법 제34조 제2항).

- 1. **기계·기구 및 설비**: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크레인 ④ 리프트 ⑤ 압력용기 ⑥ 롤러기
-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절곡기, (10) 곤돌라, (11)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 2. **방호장치**: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⑥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⑦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3. 보호구: ①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⑥ 송기마스크 ⑦ 전동식 호흡보호구 ⑧ 보호복 ⑨ 안전대 ⑩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⑪ 용접용 보안면 ⑫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고,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이에 근거하여 안전인증·자율안전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임의인증제도).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 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나,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시행규칙 제58조의2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³⁾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증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산안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다(시행규칙 제58조의2 제2항).

다. 안전인증의 표시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법 제34조의2 제1한)

- ▶ 안전인증(법 제34조 제2항)
 - ※ 시행규칙 별표 9(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통합인증 마크를 준용)



- ▶ 임의인증(법 제34조 제4항)
 - ※ 시행규칙 별표 9의2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법 제34조의2 제2항),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4조의2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안전인증표시를 한 경우와 안 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 안전인증표시

라. 안전인증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34조의3 제1항).

마. 미인증품・인증취소품에 대한 조치

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법 제34조의2 제4항).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미달된 경우), ③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법 제34조의4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4 제1항에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4조의4 제2항).

바. 처벌규정 및 죄수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4조 제 2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의2 제2항).
-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 제1항)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2조 제1항 제2호).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안전인증표시를 하거나 안전인 증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법 제34조의2 제2항)와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법 제34조의2 제3항)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8조 제2호).
-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제34조의2 제4항)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8조 제3호).
- 미인증품·인증취소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 (제34조의4 제1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7조의2 제1호).
- 미인증품·인증취소품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수거·파기명령을 위반한 경우(제34조의4 제2항)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7조의2 제2호).
- 미인증품·인증취소품의 제조·수입 등의 죄(제67조의2 제1호)와 미인증품·인증취소품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수거·파기명령 위반죄(제67조의2 제2호)는 구성요건을 달리 하는 범죄로서 실체적 경험범의 관계에 있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죄 (제68조 제2호)와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거명령 위반죄(제68조 제3호) 역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2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

가. 개요

깊 이 보 기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중에서 그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인증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차별화하여 제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그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⁴¹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 확인' 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1항).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이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⁹

- 1. 기계·기구 및 설비: ① 고정형 연삭기 또는 연마기,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⑥ 컨베이어, ⑦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⑧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⑨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등근톱, 대패, 루타기, 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⑩ 인쇄기, ⑪ 기압조절실
- 2. **방호장치**: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교류아크 용접기용자동전격방지기, ③ 롤러기 급정지장치, ④ 연삭기 덮개, ⑤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 ⑥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⑧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아목의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3. 보호구: ① 안전모(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② 보안경(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③ 보안면(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카목의 보 안면은 제외한다), ④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나,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면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임의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증제도

(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60조).

다. 자율안전확인 표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법 제35조의2 제1항).

- ▶ 자율안전확인 표시(안전인증마크와 동일)
 - ※ 시행규칙 별표 9(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통합인증 마크를 준용)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법 제34조의2 제2항),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34조의2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법 제35조의2 제4항).

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고를 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35조의3).

마. 미신고품·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 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③ 제 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율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미달된 경우), ④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법 제35조의4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35조의4 제1항에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35조의4 제2항)

바. 처벌규정 및 죄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제1항 위반)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9조)

-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 제1항)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2조 제4항 제3호).
-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제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안전인증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법 제35조의2 제2항)와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법 제35조의2 제3항)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9조 제1호).
-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제35조의 2 제4항) 역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9조 제2호).
- 미신고품·부적합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 (제35조의4 제1항)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67조의2 제1호), 미신고 품·부적합제품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수거·파기명령을 위반한 경우(제35조의4 제2항)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8조 제3호)
- 미신고품·부적합제품의 제조·수입 등의 죄(제68조 제2호)와 미신고품·부적합제품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수거·파기명령 위반죄(제68조 제3호)는 구성요건을 달리 하는 범죄로서 실체적 경험범의관계에 있고,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제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유사한 표시를 한 죄(제69조 제1호)와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유사한 표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제거명령 위반죄(제69조 제2호) 역시 실체적 경험범의 관계에 있다.

주석 및 참고 문헌

- 1.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고시).
-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항만법, 광산보안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3.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국내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
- 4.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5.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